4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4-1. 전문연구요원 편입자격과 절차는?

■ 병역지정업체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자격을 갖추고 연구 분야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 후에 편입원서를 제출받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원서를 제출합니다.

용어해설

▼ **편입** : 병역의무 대상자 신분에서 전문연구요원(병역의무 중) 신분으로 바꿔주는 행정처분

편입자격

■ 자연계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 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편입기준

■ 국내대학원 수학자의 편입기준

연구분야	편입기준(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
◆ 자연계 연구기관 ◆ 특정 연구기관(과학기술원 제외) ◆ 우수집단인 연구기관 ◆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실시 연구기관 ◆ 자연계 분야 대학부설 연구기관 ◆ 자연계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방위산업 연구기관	1. 자연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 (이학, 공학, 도시계획학, 조경학, 약학, 농학, 수산학 등) 2. 수의학, 보건학, 간호학 석사 또는 박사 3. 기초의학 전공 석사 또는 박사(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4. 디자인학 전공 석사 또는 박사 ※ 의상디자인, 공예디자인 등 예술관련분야는 편입제외 5. 이·공계열 학과의 이·공계 과목을 전공하고 취득한 교육학 석사 또는 박사 6. 미술학 석사 또는 박사(산업·시각·제품·실내·포장디자인 전공) 7. 심리학 석사 또는 박사(인지심리학, 생물심리학 전공)
◆ 자연계 대학원 ◆ 과학기술원	자연계 연구기관의 편입대상 전공분야의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을 수료한 사람

■ 국외대학원 수학자의 편입기준

▸ 국내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과 및 전공은 국내대학원의 분류기준에 준함)

▸ 국내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와 동등한 학위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석사학위와 동등한 학위	박사학위와 동등한 학위
• Master of Science(미국, 유럽) • 修士(일본) • Diploma(독일)	Doctor of Philosophy

▸ 학위증명서에 의하여 학과·전공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교과목, 성적증명서 등 확인

■ 기초의학 전공

의과대학원	치과대학원	한의과대학원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병리학, 법의학, 약리학, 기생충학, 임상약리학, 미생물학, 면역학, 의공학, 의학공학, 예방의학, 산업의학, 사회의학, 의료관리학, 의사학, 의료정보학, 계량의학, 의학교육학 등	구강해부학, 구강조직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생물학, 구강병리학, 구강악안면생명과학, 구강악안면기능생물학, 구강악안면감염질환 및 면역학, 환경지역사회구강보건학, 치과약리학, 예방치(과)학, 치과(생체)재료학, 치과경영정보학, 치과생체모방재료과학, 정보기술과치과의료학, 인체생물학 등	한(방)약리학, 침구경락학, 동서신경과학, 서종양학, 의료공학, 임상영양학, 제3의학, 신약개발학, 한의정보학, 원전학, 의사학,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본초학, 방제학, 경혈학, 해부학, 예방의학, 생화학 등

편입원서 출원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제출하면 병역지정업체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붙임 제5호 서식 참조), 현역병 입영대상은 배정인원(보충역은 업체 필요인원) 범위 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접수일부터 7일 이내(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기일이나 소집일자 5일 전까지)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붙임 제3호 서식)

▸ 학위수여 증명서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붙임 제4호 서식)

■ 처리결과는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편입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편입 처분한 후에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

4-2.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등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습니다.
- 병역지정업체장은 편입을 전제로 의무자 채용 시 인적사항과 병역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편입제한 대상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법 제38조의2)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이탈(1일 이상)한 사람(법 제68조)
-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법 제68조)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법 제86조)
-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법 제87조)
-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법 제87조)
-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람(법 제88조)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법 제94조)
-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을 제한받은 병역지정업체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을 편입시킬 수 없음(훈령 제28조)
- 연구요원의 대학원 전공분야와 다른 분야에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는 편입제한(훈령 제30조)
-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훈령 제31조)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 4촌 이내 혈족 확인 자료제출

- 병역지정업체장은 법인등기부등본, 4촌 이내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등을 비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붙임 제5호 서식)하여야 합니다.
- 병역지정업체장은 의견진술시 대리인에게 진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법 제95조제3항)

[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 범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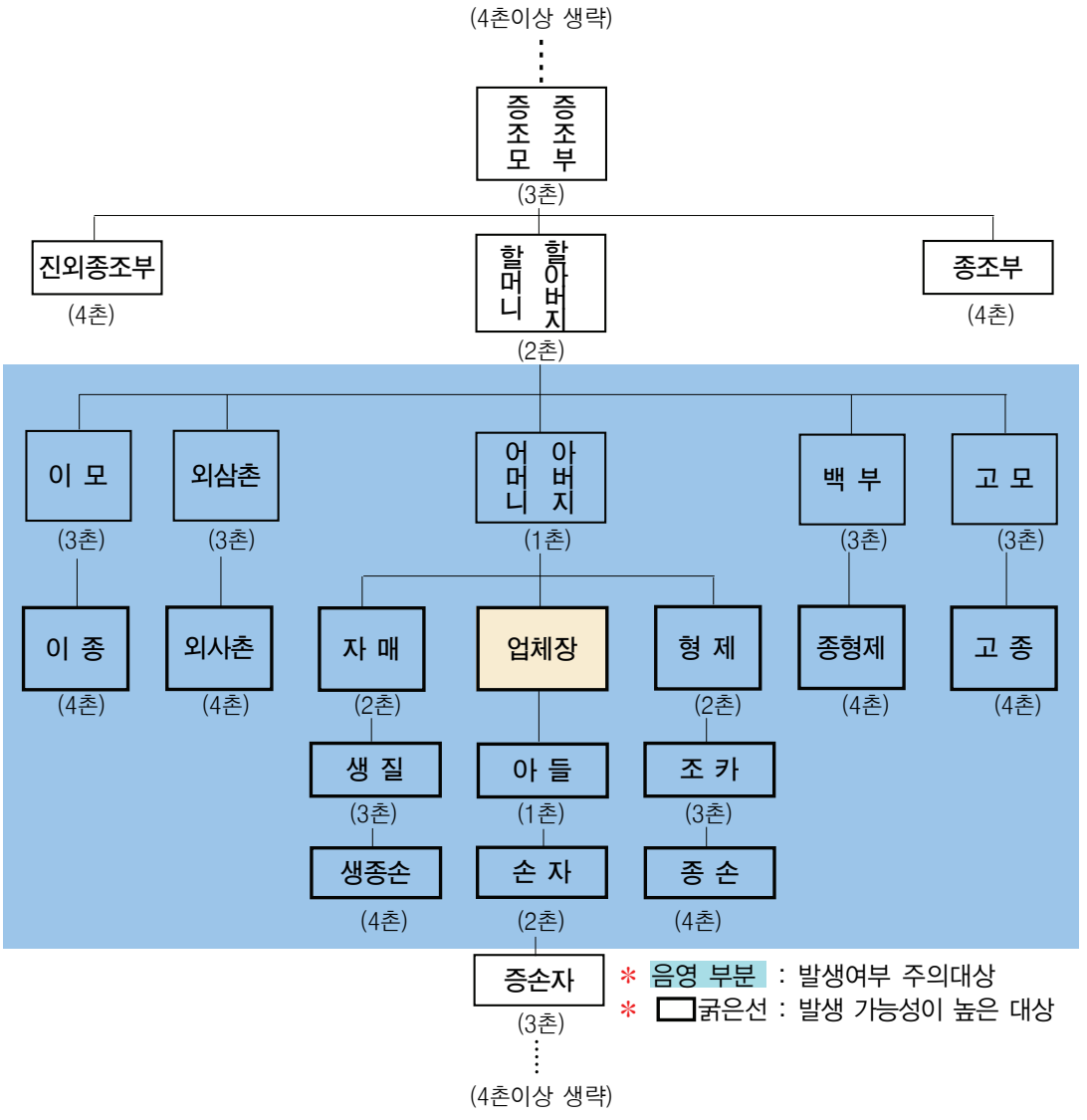

※ 업체장의 배우자와 혈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무관. 즉, 업체장이 여자(남자)일 경우 남편(아내)의 혈족관계상 4촌 이내에 있는 사람도 편입 가능

용어해설

- **복무이탈** :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벗어남
- **기피** :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지 않는 것

5 복무 방법(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

5-1. 전문연구요원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병역지정업체장은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을 경우 병역지정업체는 고발,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의무자는 편입취소 및 연장복무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지정업체란 동일법인 내의 여러 연구소가 있어도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한 연구소만을 의미합니다.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장소의 제한)

■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법인이 아닌 연구소를 의미)에서 근무하여야 하므로 당초 편입한 연구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 전직·파견·출장·국외여행 등으로 병역지정업체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승인·신상변동통보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장소제한의 예외)

- 대학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소 특성상 부득이하게 지정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해당학과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다만, 지도교수 사무실에서의 연구활동은 제외)
-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사업장 등에서 연구하여야 하는 경우

편입당시 해당분야(업무의 제한)

■ 편입당시 연구분야(대학원 전공분야)에 복무

※ 대학부설 연구기관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연구조교 겸직 가능

■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 대학부설 연구기관 또는 우수집단인 연구기관의 장이 두뇌한국21계획에 의한 사업단이나 다른 기업과 공동연구 또는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편입당시의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않은 위반사례

◆ ○○소재 기업부설 연구기관에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을 편입 당시 연구기관이 아닌 △△소재 대학의 연구소에서 4개월 동안 근무시킨 경우

➤ **병역법 위반 : 병역지정업체 고발, 의무자 4개월 연장복무**

편입당시의 연구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위반사례

- 기업부설 연구기관에 편입한 유학 경력이 있는 전문연구요원의 외국어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연구분야가 아닌 해외 영업부에 6개월 동안 근무시킨 경우
  - ➤ 병역법 위반 : 병역지정업체 고발, 의무자 6개월 연장복무

5-2. 전문연구요원은 겸직이 금지됩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개인 영리활동,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 겸직이 불가능한 업무

- 「민법」·「상법」에 의한 기업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 편입당시 연구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 겸직으로 보지 않는 업무

- 박사과정 수료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경우
- 연구업무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 포함)

➤ 개인 영리활동 금지

- 근로시간 중에 개인 영리활동 금지
- 병역지정업체장은 전문연구요원이 근무시간 중 연구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활동 등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임원을 겸직한 위반사례

- 기업부설 연구기관에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을 소속법인의 이사로 임명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의 권한인 결재 등의 업무를 7개월 동안 시킨 경우
  - ➤ 병역법 위반 : 병역지정업체 고발, 의무자 7개월 연장복무

사무관리를 겸직한 위반사례

- 기업부설 연구기관에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을 연구업무 외에도 유학경험을 활용하여 연구와 관련없는 번역 업무를 5개월 동안 겸직시킨 경우
  - ➤ 병역법 위반 : 병역지정업체 고발, 의무자 5개월 연장복무

영리활동을 겸직한 위반사례

- 전문연구요원이 조기 퇴근하여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체장이 8개월 동안 묵인한 경우
  ➤ **병역법 위반 : 병역지정업체 고발, 의무자 편입취소**

5-3. 전문연구요원은 수학이 금지됩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한다)할 수 없습니다.

➤ 수학금지의 예외

■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 전문연구요원이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3년6개월 범위 내에서 수학 가능
- 수학의 신상변동통보 기간 : 수학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상변동통보 절차 : 의무자 → 업체의 장 → 관할 지방병무청장

■ 복무만료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경우(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주간대학 수학 위반사례

- 전문연구요원은 주간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없으나, 주간에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지 않고 ○○대학원(경기 소재) 주간학과에 1년간 수학하도록 병역지정업체장이 묵인한 경우 ➤ **병역법 위반 : 병역지정업체 고발, 의무자 편입취소**

주간과정의 야간수업 위반사례

- 보충역 대상인 사람이 주간대학원을 휴학한 후 학사학위로 중소기업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하면서, 야간대학원의 동일학과 과정에 복학하여 야간에 1년간 수학한 경우 ➤ **병역법 위반 : 연장복무**